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60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년 4월 22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2016.12.29. 일괄개정 당시의 경과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, 해당 부칙안이 현재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, 현행 법체계와 명백히 충돌하거나 해석상 혼란을 유발하기 어려워 개정의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부칙안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의 부칙을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<u>서울특별시립유치원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</u> 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(생략)</p>	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(원안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서울특별시조례 제5436호 <u>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 부칙</p>	<p><u>서울특별시조례 제54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 부칙</p>	<p><삭 제></p>
<p>제2조(병설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)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<u>학교운영위원회</u></p>	<p>제2조(병설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)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제19조의3제6항-- ----- ----- -----</p>	<p><삭 제></p>

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----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-----
-----.